

1.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 학원 학칙 중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학전형 시기 및 방법)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입학전형은 연1회 또는 연2회에 걸쳐 매 학기 전에 실시하며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전형 : 시험전형으로 한다.
- ② 특별전형 : 무시험전형으로 한다.

제 3조(입학전형 공고)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형 실시 1개월 전에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 4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②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5조(입학지원 서류) 본 대학원 각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본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② 대학졸업(졸업예정) 증명서 1부
- ③ 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④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제 6조(전형료)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시험과목) 입학전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전형
 - 가. 면접/서류전형
 - 나. 실기시험(예능계열 지원자에 한함)
- ② 특별전형
 - 가. 대학성적
 - 나. 면접/서류전형

제 8조(출제방식) 입학시험의 출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면접/서류전형 - 각 전공별 면접/서류전형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거 원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이 시행한다.

제 9조(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입학사정)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사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합격자 선발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사정한다.

① 실기시험 성적

② 면접/서류전형 성적

단, '수학불가' 판정을 받은 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등록)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모든 절차를 거쳐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자격을 얻게 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료자 등록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수료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등록대상)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조(등록신청) 수료자 등록은 연구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대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및 논문발표 신청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조(등록신청 시기) 수료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초 및 8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등록금) 수료자의 등록금액은 연구지도 및 도서관 등 제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실경비에 상응한 금액으로 재학생 등록금의 10%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 6조(신분보장) 수료자 등록생은 정규학생신분에 준하며 학생증을 교부받아 학교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7조(자격취소) 수료자 등록생이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등록 및 학적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등록 및 학적에 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 학

제 2조(휴학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1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진단서
- ② 가사형편에 의한 경우 : 증빙서류
- ③ 군복무인 경우 : 현역 입영명령서 사본
- ④ 장기 해외출장인 경우 : 증빙서류
- ⑤ 출산 및 육아휴학인 경우 : 증빙서류(2016.11.07.신설)

제 3조(휴학원 제출시기)

- ①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은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원서를 입영일 2주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제 4조(휴학기간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복학예정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 입 학

제 5조(재입학 시기) 재입학은 매학기 초 1개월 이내에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재입학자 학점인정 및 등록) 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정규등록금 이외의 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

야 한다.

편 입 학

제 7조(편입학 전형시기 및 방법) 편입학 전형은 년1회 또는 2회에 걸쳐 매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전형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제2, 3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학교에서 지원학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해당학기를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제 9조(입학지원 서류)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내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1부
- ② 대학원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
- 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제10조(전형료) 편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사정 및 등록) 입학사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입학전형의 모든 절차를 거쳐 합격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자격을 얻게 된다.

제12조(학점인정) 편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지원학과(전공)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는 12학점 범위내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되 해당학과장의 사정안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별 학점이 본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학점수를 맞추어 인정한다.

제13조(성적표기) 이수가 인정된 교과목의 성적표기는 학칙 제1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기하되 전적학교의 성적표기방법이 본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표기한다.

제14조(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에서 인정받은 학기를 감한 기간의 2배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학점,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중 학점,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 점

제 2조(학점신청) 학점신청은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3조(성적) 학업성적은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며, A+, A, B+, B, C+, C, F 등급 외에 P(Pass) 학점을 둔다. P학점은 등급, 점수, 평점과는 무관하고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제 4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 5조(협력대학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 표기 및 학점수는 본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다만, 협력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협력대학원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평가를 통하여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논문연구 학점

제 7조(논문학점) 논문연구 학점은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전체적인 지도를 받으며, 논문을 진행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정규학점 이외의 2학점으로 한다.

수 강 신 청

제 8조(수강신청) 등록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9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정정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한다.

시 험 및 출 석

제10조(정기시험) 정기시험은 매 학기 말에 각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간시험은 담당교수의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부 관리) 강의출석부는 담당교과목 교수가 관리하며, 출결상황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한다.

제12조(출석부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출석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제13조(교육과정 편성)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하며 명기하지는 아니한다.

- ① 공통필수과목
- ② 전공필수과목
- ③ 전공선택과목
- ④ 논문대체과목
- ⑤ 논문연구

제14조(교육과정 결정)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5조(교과목 설정의 원칙) 모든 교과목은 석사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 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논문대체과목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교수협의로써 의결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강좌개설) 각 학과장은 강좌개설 학기 2주전에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강좌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할 경우 원장은 타 대학원과 공동강의를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의 교과목(강의, 실험 및 실기)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교내의 조교수이상의 교원
- ② 교내의 전임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 ③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19조(담당과목 학점 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학과목 학점수는 학기당 6 학점(교직과목포함)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강사요청)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 2주전까지 해당학과장이 시간강사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학과장이 강사 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선수과목의 이수) 전공 또는 교직과목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선수과목은 학기당 3학점, 총15학점 범위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23조(선수과목 학점)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되며 대학원 성적평균평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시험

제 2조(자격시험 종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 3조(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시험위원)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외국어 시험에 있어서는 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제 5조(시험결과 처리) 자격시험의 결과는 본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열람시키고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외국어시험

제 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 7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수학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학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시험수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해당 외국어문헌 해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 9조(시험시간) 외국어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제10조(합격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재응시)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

다.

종 합 시 험

제12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과 최저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14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3과목으로 하며, 전공 2개 과목과 선택 1개 과목으로 한다.

제15조(시험수준) 종합시험의 수준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16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각 과목마다 50분으로 한다.

제17조(합격인정)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8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제출자격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4회 이상(단,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은 5회) 정규등록을 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단, 각 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별 최소학점 14학점(기초공통과목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비논문제출자 포함)
- ②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80점) 이상인 자
-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④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⑤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⑥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⑦ 논문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자
- ⑧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논문 연구계획서

제 3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3학기초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논문연구계획서 심사) 논문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 및 지도보고서

제 5조(논문 지도교수 선정)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 초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학과장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 6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 교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겸임교수로서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교수로 한다.

제 7조(논문 지도 편수제한)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논문은 3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논문 지도교수 변경)

① 원칙적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장의 사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제 9조(논문 지도보고서) 논문 지도보고서는 학위논문 발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지도기간) ① 학위 청구논문은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월1회)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 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제11조(논문제목변경) 논문지도 중 논문제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은 지도교수의 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논문발표

제12조(논문 발표신청서) 논문 발표신청서는 학위논문 발표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발표) 논문발표는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 발표시기) 논문 발표시기는 학기 중 년2회 실시한다.

제15조(논문 발표공지) 논문 발표회는 해당 학과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논문 발표요지) 논문 발표요지는 16절 크기의 요지에 20매 내외로 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발표 시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논문 발표결과 보고)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논문의 제출 적,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및 평가

제18조(논문 심사위원 추천)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은 학위논문 발표 2주전까지 원장에게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논문심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중 1명은 외부교수로 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논문 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20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논문 심사위원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임무)

- ①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요지, 논문 전체 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심사 방법) 논문 발표요지, 예비심사, 본심사의 순으로 하며, 심사위원 전체의 의결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논문평가 기준) 논문 심사 평가기준은 A+, A0, B, C 등급으로 평가한다.

A+ (95점-100점)	- 최우수 논문
A0 (90점-94점)	- 우수논문
B (80점-89점)	- 보통논문
C (79점 이하)	- 불합격

제24조(논문 재제출)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1학기가 경과한 후 재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논문 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예비심사

제26조(예비심사용 논문제출) 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예비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심사 시기) 논문 예비심사는 5월 중순 또는 11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한다.

제28조(예비심사 방법) 논문 예비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실시한다.

제29조(예비심사 결과보고) 각 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 본심사

제30조(본심사용 논문제출)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추어 본 심사용 논문 3부를 본심사 실시 1주일 전에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본심사 시기) 논문의 본 심사는 예비심사 이후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제32조(본심사 방법) 논문의 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본심사 내용) 논문의 본 심사는 예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논문 평가) 논문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가, 부를 결정한 다음 제23조 논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우수논문 포상) 본 심사 결과 특별히 우수한 논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체제

제36조(논문의 구비사항) 학위 청구논문에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 ① 표제지(별표1)
- ② 인준서(별표 3)
- ③ 목차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⑦ 영문 및 국문 논문초록

제37조(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산 분량에 준하며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제38조(논문 표기언어)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위논문 체제) 학위논문체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① 판종 : 4.6배판(18.5cmX25.5cm)
- ②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③ 인쇄방식 : 공판, 활판, 전산활자로 인쇄하여야 한다.
- ④ 표지색깔 : 흰색
- ⑤ 표지 및 내표지 인쇄양식 :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 ⑥ 학위논문 인준 속표지 :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 ⑦ 국문초록 :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 ⑧ 영문초록 :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 ⑨ 배면 :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제40조(글자크기) 논문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의 글자크기는 11pt(단, 각주는 9pt로 함)이다.
- ② 줄간격은 200%이다.
- ③ 용지여백은 위쪽 30, 머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아래쪽 30, 꼬리 말 0로 한다.

제41조(논문제출) 인쇄 완료된 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20권(심사위원 날인본 3권 포함) 및 디스켓(본문, 영문, 국문초록이 수록) 1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석사논문 대체시험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위논문에 갈음하는 대체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시험 자격

제 2조(대체시험 자격) 석사논문 대체시험을 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가진 자
- ② 대체시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논문대체시험 신청서

제 3조(논문 대체시험 신청서 제출) 논문대체시험 신청서는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학기초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관련 보고서

제 4조(주제관련 보고서 제출) 논문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관련 보고서를 구술시험 2주전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 5조(주제관련 보고서 심사) 심사위원은 주제관련 보고서를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제 6조(보고서 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과 동일하다.

구술 시험

제 7조(구술시험 실시)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구술시험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 8조(구술시험 내용)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제 9조(구술시험 합격기준) 구술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구술시험 심사위원) 보고서 심사위원이 맡게 되며, 심사위원의 인원수는 3명이다.

필기 시험

제11조(필기시험 실시)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필기시험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12조(필기시험 내용 및 채점기준)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명확하고 깊이있게 기술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제13조(필기시험 시간) 시험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제14조(필기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논문의 지도교수가 맡게 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외국인 학생 및 위탁생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과와 정원에 관한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학생

제 2조(입학시기) 외국인 학생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제 3조(입학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학원서 1부
- ② 대학졸업증명서 1부
- ③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④ 교수 추천서 1부
- ⑤ 이력서 1부

제 4조(입학전형) 외국인의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전형
 - 가. 전공과목시험
 - 나. 한국어시험
 - 다. 면접시험
- ② 특별전형
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합격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5조(학칙준수) 외국인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의 학칙과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위탁생 및 협동과정 학생

제 6조(기타 정원 외 입학허가) 다음의 학생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 ①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
- ②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

- ③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제 7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제 8조(입학지원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 ② 대학졸업증명서 1부
- ③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④ 당해 기관의 추천서 1부
- ⑤ 이력서 1부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연구생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연구생 및 공개강좌 설치에 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 구 생

제 2조(연구생 정원) 연구생은 비학위 과정으로 수학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생 정원은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제 3조(입학자격) 연구생의 입학지원자격 및 전공분야는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 4조(입학시기) 연구생의 입학시기는 석사과정에 동일하다.

제 5조(입학지원서류)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학원서 1부
- ② 대학졸업(졸업예정)증명서 1부
- ③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④ 이력서 1부
- ⑤ 사진(5X7cm 상반신) 4매

제 6조(입학전형)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시험

제 7조(수학연한)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연구기간의 연장은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매학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 8조(수료학점) 연구생의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 9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 개 강 좌

제10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개강좌의 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개강좌 운영) 이미 개설된 공개강좌의 제반 세부시행과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공개강좌 수료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학생지도 및 장학금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생지도 및 장학금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지도

제 2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에 정진하고 대학원생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 3조(취업보고서) 학생은 매학기 초에 취업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연구활동) 학생은 사전에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전공분야에 관계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조(단체활동) 학생은 연구활동과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이 모임은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 학 금

제 6조(장학금 수혜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전 교과목 평균평점이 90점 이상으로, 각 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②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으로 가사형편이 극히 어려운 자
- ③ 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하는 자

제 7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 본 대학원의 장학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내 장학금
 - 가. 갑종장학금 : 납입금 전액
 - 나. 을종장학금 : 납입금 반액
 - 다. 병종장학금 : 기성회비전액

- 라. 특별장학금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정금액
② 교외 장학금

제 8조(장학사정) 장학사정은 매학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9조(장학금 중복금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되는 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연구비 지급)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학생에게 교비 또는 교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비연구비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징계) 학생의 신분이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를 받으며, 징계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근신
- ② 유기정학
- ③ 무기정학
- ④ 제적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학과장(전공주임)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과장 선정) 학과장 선정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조(학과장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과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새 학과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4조(학과장의 임무) 학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학과(전공) 학생들의 지도
- ②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
- ③ 논문 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
- ④ 선수, 기초과목의 교과목 결정
- ⑤ 수강신청 확인 및 지도
- ⑥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 변동에 대한 지도
- ⑦ 타 학과(전공)간의 상호협조
- ⑧ 조교에 대한 지도
- ⑨ 학적 및 자격시험에 대한 지도
- ⑩ 학위논문제출에 관한 제반사항 지도
- ⑪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
- ⑫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조(학과교수회의)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 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전공의 전체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 3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⑤ 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⑥ 학생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⑦ 우수논문 포상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위원변경) 위원회의 위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으로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4cm	
○○학석사학위논문	14pt
↓ 1.5cm	
논문제목(# 신명조)	29pt
↓ 8cm	
가야대학교 대학원	
○○학 전공	16pt
↓ 1.5cm	
성 명	16pt
↓ 2.0cm	
0000년 0월	
↓ 4cm	
16pt	

별표(2)

↓ 4cm	
논문제목(# 신명조)	26pt
↓ 2cm	
가야대학교 대학원	
○○학 전공	16pt
↓ 1.5cm	
성 명	16pt
상기자의 ○○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소속 직위 학위 성명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16pt
심사위원	
0000년 0월	
↓ 4cm	

별표(3)

↕ 4c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논문제목</div>
	16pt
↕ 1.5c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성 명</div>
	16pt
↕ 1cm	
가야대학교 대학원	
○○학 전공	
<국문초록>	11pt
↕ 1cm	
본 연구는...	(지도교수 : 0 0 0)
↕ 1.5cm	

별표(4)

↕ 4c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A STUDY ON THE ...</div>
	16pt
↕ 1.5c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FULL NAME</div>
	16pt
↕ 1cm	
Graduate School Of KAYA University	
Major in ...	
<Abstract>	11pt
↕ 1cm	
Many Method	(Directed by Prefessor 000)
S...	↕ 1.5cm

별표(5)

